

농산물 원산지 표시

1 표시기준

■ 국산 농산물

- ▶ "국산"이나 "국내산" 또는 생산한 "시·도명", "시·군·구명"을 표시
※ 최소 판매 단위별로 원산지 표시(예 : 단호박, 멜론, 수박 등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)

■ 국산 가공품 :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

- ▶ 1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% 이상인 경우는 1가지 품목
- ▶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% 이상인 경우 2가지 품목
※ 김치류 및 절임류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, 소금 원산지표시 (2020. 1. 1. 시행)
- ▶ 그 외 : 배합비율이 높은 3가지 품목의 원산지 표시

■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

- ▶ 수입 통관 당시의 원산지 표시 (수입국가명)
[예] 중국(중국산), Made in China, Product of China

2 표시방법

■ 포장판매하는 경우 (통관 후 재포장하는 수입 농산물 포함)

- ▶ 포장재에 직접 인쇄, 스티커, 전자저울 라벨지 부착
- ▶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, 내찰로 표시 가능



■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스티커, 용기표면, 풋말, 안내판 등에 표시 (수입 농산물 포함)

- ▶ **스티커** (가로3cm이상X세로2cm이상) ▶ **풋말** (가로8cmX세로5cmX높이5cm이상)



▶ 안내판

진열대(7cmX5cm이상)



판매장소(14cmX10cm이상)



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제재기준

- 원산지 거짓표시 :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, 자치구 홈페이지에 업소명 위반 내역 등 공개
- 원산지 미표시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위반 물량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)

수산물 원산지 표시

1 표시기준

■ 국산 수산물

- ▶ "국산"이나 "국내산" 또는 "연근해산"으로 표시 ("시·도명", "시·군·구명"명을 표시)
- ▶ "원양산" 수산물은 "원양산" 또는 "원양산" 표시와 함께 ("태평양", "대서양", "인도양", "남빙양", "북빙양") 해역명을 표시한다.

■ 수입 가공품

- ▶ 1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% 이상인 경우는 1가지 품목
- ▶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% 이상인 경우 2가지 품목
- ▶ 그 외 : 배합비율이 높은 3가지 품목의 원산지 표시

■ 수입 수산물

- ▶ 수입국가명(통관시 원산지)
- ▶ 수입국가명 또는 국명산, "Made in 국가명 또는 Product of 국가명"으로 표시
[예] 중국(중국산), Made in China, Product of China

2 표시방법

■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

- ▶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,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
- ▶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, 꼬리표 등으로 표시

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

- ▶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, 풋말, 표지판 등으로 표시

■ 살아있는 수산물

- ▶ 보관시설(수족관, 활어차량 등)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풋말 또는 표지판 등으로 표시(일괄표시 가능)
- ▶ 수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구획하지 아닐 수 있음

■ 혼합수산물(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)

- ▶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 품목의 원산지 표시
 -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
 - 예) 해물탕(우럭 : 국내산, 바지락 : 중국산 / 미더덕 등)
 - 예) 해물탕(홍합 : 국내산, 새우 : 태국산, 바지락, 미더덕 ...)
- ※ 수산물에 한하여 적용 / 농축산물은 미적용

